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429

발의연월일 : 2026. 3. 12.

발 의 자 : 김병주・허성무・황 희
윤종군・황명선・한준호
박희승・채현일・송재봉
이언주・이상식・윤준병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가 공평하게 부담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이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병역판정검사가 이루어져야 함. 하지만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질환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당장 판정이 어려워 ‘7급(재신체검사)’ 처분을 받는 병역의무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들 대다수는 20대 청년으로 학생이거나 취업 준비생 등 경제적 자립 이전 단계에 있어, 재판정을 위해 필요한 정밀 검사와 치료 비용은 본인과 가족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특히 이러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치료나 진단서 제출을 포기하게 될 경우, 정확한 신체등급 판정이 저해되어 군 복무 부적응이나 부당한 병역 면탈 논란 등 병역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이에 질환 및 부상 사유로 7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신

체등급 판정에 필요한 진료 및 치료 비용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 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취약계층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병역 이행 과정에서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정확한 병역 판정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청년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년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신체등급 판정에 필요한 진료 및 치료 비용

제7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5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등급 판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1항제5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은 사람(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신체등급 판정에 필요한 진료 및 치료 비용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5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